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경고) · 개선

제 목 소방항공대 조종사 비행훈련 · 평가소홀 및 보안대책 미수립

기 관 명 울산광역시

훈 계 (경 고) ① 울산광역시 ○○본부 ○○○○과 지방○○○ ○○

대 상 자

② 울산광역시 ○○본부 ○○○○과 지방○○○ ○○○

③ 울산광역시 ○○본부 ○○○○과 지방○○○ ○○

④ 울산광역시 ○○본부 ○○○○과 지방○○○ ○○○

⑤ 울산광역시 ○○본부 ○○○○과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01. 9. 3.부터 2015. 12. 31.까지, 지방○○○ ○○○는 2003. 1. 1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은 2003. 10. 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은 2013. 12. 2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 ○○○은 2016. 1. 4.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항공구조구급대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여 오고 있는 자들이다.

1. 항공기 조종사 비행교육 · 훈련 소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63조(비행교육훈련)의 규정에 따르면 소방

항공대의 항공기 조종사는 기술유지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비행훈련(기본비행, 야간비행, 계기비행), 산불진압, 항공방제·방역훈련 및 구조·구급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울산○○○○대는 [표1]와 같이 인원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63조7)(비행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비행훈련(기본비행, 야간비행, 계기비행), 산불진압, 구조·구급훈련과 부조종사의 주조종사 자격회복을 위한 자격회복 훈련, 신임조종사 기종전환비행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표1] 울산○○○○대 인원 및 장비현황

대장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 대원	항공기	차량	구조·구급 장비
1	4	3	6	¹ (KA-32T 까모프)	³ (유조, 견인, 산악)	166종 467점

※ 울산광역시(울산○○항공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63조에는 기술유지를 위한 비행훈련 중 야간비행훈련은 90일 이내 1시간이상, 계기비행훈련⁸⁾은 6월 이내 6시간이상

7) 제63조(비행교육훈련)

- ① 항공대장은 조종사의 조종 능력 향상을 위한 비행훈련, 산불진압, 항공방제·방역훈련 및 구조·구급훈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본비행훈련은 타 시·도 숙지비행을 포함하여 월 2시간 이상의 주간비행으로 하고, 보유 기종별로 최종 비행일부터 90일 이내에 3시간 이상
 2. 야간비행훈련은 최종 비행 일부터 90일 이내에 1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시간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기비행훈련은 자격보유자가 최종 비행 일부터 6개월 이내 6시간 이상 계기비행경험을 유지하도록 하도록 한다.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 또는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2016.12.21. 개정)
 - ※ 2016.12.21.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 전까지는 계기비행은 90일 이내 1시간 이상 실시 하여야 함
 - ② 항공대장은 조종사의 기량유지를 위하여 자격회복 훈련 및 기술유지 비행훈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 하여야 한다.
 1. 기본비행, 야간비행 또는 계기비행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의 자격 회복 훈련을 하고 자체평가를 하여야 하며 자체평가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자격회복훈련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3. 소방항공기를 조종(자격을 보유한자)하려는 사람은 3개월에 1회 1시간 이상 기술유지비행(모의비행장치 훈련을 포함한다)을 하여 비행숙련상태를 유지하고 제35조에 따라 기록·관리 한다.
- 8) 2016.12.21.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개정 전까지는 계기비행은 90일 이내 1시간 이상 실시 하여야 하였으나,

의 경험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주기적인 시간을 정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주간, 야간, 기상 악조건 등에도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을 하여야 하는 소방항공대의 특성과 어떤 상황에서든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대 항공기 조종사들은 [표 2]와 같이 비행교육훈련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기술유지 훈련 실시현황

기술유지(야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	1회(0+30) (3.22)	1회(0+40) (1.29)	4회(3+50) (3.11, 5.2, 9.18, 11.22)	5회(6+30) (4.17, 7.14, 7.18, 10.10, 11.27)	5회(4+20) (2.7, 5.2, 7.12, 10.16, 10.21)
	2, 3, 4분기 미실시	2, 3, 4분기 미실시	시간 미충족	1분기 미실시	완료
○○○	1회(0+40) (3.3)	1회(0+20) (11.11)	2회(1+45) (9.18, 10.19)	5회(8+10) (3.9, 3.12, 7.20, 10.12, 12.15)	4회(5+40) (4.18, 5.7, 7.26, 10.18)
	2, 3, 4분기 미실시	1, 2, 3분기 미실시	1, 2분기 미실시	2분기 미실시	1분기 미실시
○○ (13년 임용)		2회(2+10) (8.12, 11.11)	8회(11+45) (1.7, 3.11, 3.12, 5.2, 10.2, 10.30, 11.19, 12.17)	4회(4+20) (3.9, 7.18, 10.10, 11.27)	6회(6+50) (2.7, 5.2, 5.7, 7.26, 10.18, 10.21)
		1, 2분기 미실시	3분기 미실시	2분기 미실시	완료
○○○ (16년 임용)				6회(10+20) (3.12, 4.17, 7.14, 7.20, 10.12, 12.15)	3회(3+10) (4.18, 7.12, 10.16)
				완료	1분기 미실시

2016.12.22. 이 후 6개월 이내 6시간 이상을 실시(1년 12시간 이상)하여야 함

기술유지(계기)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	3회(7+10) (2.22, 3.22, 8.21)	2회(5+20) (6.26, 6.30)	4회(4+20) (3.11, 3.16, 6.1, 8.5)	6회(6+50) (2.4, 3.21, 4.17, 5.11, 10.24, 11.16)	4회(10+00) (2.16, 7.20, 10.27, 12.14)
	2, 4분기 미 실시	1, 3, 4분기 미 실시	4분기 미 실시	3분기 미 실시	2시간 부족
○○○	3회(5+40) (2.18, 11.25, 11.26)		2회(2+00) (8.18, 8.19)	6회(10+40) (2.4, 3.9, 4.25, 4.26, 8.12, 10.19)	4회(09+00) (3.30, 3.31, 5.18, 10.25)
	2, 3분기 미 실시	미 실시	1, 2, 4분기 미 실시	완료	3시간 부족
○○ (13년 임용)		1회(1+50) (8.12)	10회(13+30) (1.7, 3.11, 3.12, 4.30, 5.1, 10.2, 10.30, 11.9, 11.10, 12.17)	8회(10+20) (2.5, 3.9, 3.21, 5.11, 8.9, 8.12, 10.19, 11.16)	4회(10+00) (2.17, 6.1, 7.20, 12.14)
		1, 2, 4분기 미 실시	3분기 미 실시	완료	2시간 부족
○○○ (16년 임용)				5회(7+20) (2.5, 4.17, 8.9, 10.24, 10.27)	10회(41+30) (1.23, 2.16, 3.31, 5.17, 5.18, 5.19, 5.31, 8.18, 10.27, 12.21)
				완료	완료

※ 울산광역시(울산○○○○대) 제출자료 재구성

2. 항공기 신규임용 조종사 비행 교육·평가 부적정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63조(비행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신규 임용된 조종사는 항공기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유 기종별로 20시간 이상의 기종전환비행과 5시간 이상의 인명구조훈련, 화재진압훈련 및 야간비행 훈련을 하여야 하며, 신입조종사의 교육훈련 평가관은 조종교육증명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항공대 근무경력이 있는 조종사 중 해당기종 기장으로서 2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사람으로 하고, 교육훈련평가는 지상학 평가와 훈련비행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한 것으로 하고 있다.

울산○○○○대에서는 부족한 항공기 조종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2013. 12. 23.(조종사 ○○)과 2016. 1. 4.(조종사 ○○○) 신규 조종사 2명을 임용

하였으며,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 조종사의 기종전환 비행 교육훈련계획을 2013. 12. 26.(조종사 ○○)과 2016. 1. 4.(조종사 ○○○) 수립하고 신입 조종사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2013년 임용된 조종사 ○○은 기종전환비행 훈련 시 총 16회(24시간 50분)의 비행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총 비행시간 16회(24시간 50분)중 주간비행 15회(24시간 15분), 화재진압 1회(35분)를 실시하여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46조⁹⁾의 교육시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또한 2016년 임용된 조종사 ○○○은 기종전환비행 훈련 시 총 11회(21시간 25분)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주간비행 8회(14시간 40분), 산불진화 2회(5시간 10분), 야간비행 1회(1시간 35분)를 실시하여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63조¹⁰⁾의 기종전환비행 시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표3]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3] 신규 임용 조종사 기종전환비행 교육 실시현황

성명	기종전환비행 훈련 내역				훈련시간
○○ (2014년)	1.14.(13:40~15:10), 1.29.(09:50~11:30), 2.24.(09:50~11:40), 3.5.(09:45~11:35), 3.7.(15:15~16:25), 3.7.(16:25~17:00), 3.11.(13:50~15:40), 3.14.(40분 항법 비행, 1시간 평가)	1.16.(10:10~11:30), 2.3.(10:00~11:40), 2.25.(09:50~10:40), 2.25.(13:10~14:40),	1.17.(09:50~11:30), 2.4.(10:00~11:50), 2.25.(13:10~14:40), 2.27.(13:40~15:30),	1.28.(10:00~11:40), 2.21.(09:50~11:45), 2.27.(13:40~15:30),	16회 (24시간 50분) *평가제외
○○○ (2016년)	1.11.(09:30~11:20), 1.15.(09:35~11:35), 3.7.(13:30~15:30), 3.12.(05:05~06:39 야간비행) 3.28.(09:30~10:40 평가)	1.11.(13:30~15:20), 2.23.(10:00~11:30), 3.12.(05:05~06:39 야간비행) 3.15.(09:30~11:10), 3.15.(13:20~15:10 평가),	1.12.(09:40~11:40), 2.23.(12:00~15:40), 3.15.(09:30~11:10), 3.15.(13:20~15:10 평가),	1.12.(12:40~14:30), 3.2.(09:30~11:20), 3.15.(13:20~15:10 평가),	11회 (21시간 25분) *평가제외

※ 울산광역시(울산○○○○대) 제출자료 재구성

9) 제46조(비행교육훈련) 제2항 신입조종사는 항공기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유 기종별로 20시간 이상의 기종전환비행과 5시간 이상의 인명구조훈련 및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소방방재청훈령 제327호, 2013.4.18.제정)

10) 제63조(비행교육훈련) ④ 신입조종사는 항공기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유 기종별로 20시간 이상의 기종전환비행과 5시간 이상의 인명구조훈련, 화재진압훈련 및 야간비행 훈련을 하여야 한다.(시행 2016.12.21.)

이러함에도 소방항공대 비행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평가관으로 지정된 ○○○○○(2013. 3. 14. ○○○ 평가)와 ○○○○○(2016. 3. 28. ○○○ 평가)은 교육평가 시간을 위한 비행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아니한 신입조종사 ○○○과 ○○○○○에 대한 기종전환비행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기종전환비행 평가결과 신입조종사 ○○○과 ○○○○○이 부조종사로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신입 조종사 ○○○에 대한 기종전환비행 평가 시 평가관 ○○○○○은 기종전환비행 평가표에 야간비행평가 항목이 있음에도 야간비행평가를 미 실시(추후 실시예정으로 평가표에 기록)하였으며, 또한 교육비행 평가표 항공대장 확인란에 항공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표4] 참조)

[표4] 신규 임용 조종사 교육비행 평가표

성명	평가일시	미평가 항목	평가관
○○○ (2014년)	2014.3.14.(10:10~11:40)	○ 기본 비행교육 - 11. 야간비행(추후실시예정) - 12. 비상절차(") ○ 확인관 항공대장 확인 누락	홍 수

※ 울산광역시(울산○○○○대) 제출자료 재구성

3. 항공기 조종사 자격 회복 훈련 교육·평가 부적정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45조(항공훈련)¹¹⁾ 및 제46조(비행교육훈련)¹²⁾ 규정에 따라 조종사의 자격 회복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하여 종합평점 “우” 등급 이상이면 주조종사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소방항공구조구급대에서는 2013. 12. 26. 조종사 ○○○○의 주조종사 자격회

11) 제45조(항공훈련) 3. 자격 회복 훈련 가. 기본비행 나. 야간비행 다. 계기비행

12) 제46조(비행교육훈련) 7. 기본비행, 야간비행 또는 계기비행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3시간 이상의 자격 회복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복을 위한 비행 교육훈련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조종사 ○○○는 주조종사로써 자격을 갖추기 위해 2014. 1. 6.부터 2014. 3. 10.까지 5회(7시간)의 자격 회복 훈련을 [표5]와 같이 실시하였고, 2014. 3. 10.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비행 평가관으로 지정된 조종사 ○○○은 부조종사 ○○○에 대한 주조종사 자격회복 비행평가를 실시하였다.

[표5] 부조종사 주조종사 자격 회복 비행훈련 실시현황

성명	자격 회복 비행훈련 내역	훈련 시간
○○○ (2014년)	1.6.(15:00~16:10), 1.15.(10:10~11:20), 1.27.(10:00~11:30), 2.5.(10:00~11:40), 2.20.(10:00~11:30)	5회 (7시간) *평가제외

※ 울산광역시(울산○○○○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조종사 ○○○는 2014. 1. 6.부터 2014. 3. 10.까지 자격회복을 위한 비행훈련을 5회(7시간)에 걸쳐 주간비행만 실시하고 야간비행(3시간 이상)과 계기비행(3시간 이상)은 실시하지 않아 교육평가 시간을 위한 비행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나, 교육계획에 따라 평가관으로 지정된 조종사 ○○○은 2014. 3. 10. 조종사 ○○○의 주조종사 자격회복 비행평가(평가 1시간 10분)를 실시하였다.

또한 평가관 ○○○은 조종사 ○○○의 자격회복 비행평가 시 야간비행평가 항목이 있음에도 야간비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조종사 ○○○가 주조종사로서 항공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함은 물론, 교육비행 평가표 확인란에 항공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표6] 참조)

[표6] 정조종사 교육비행 평가표

성명	평가일시	미평가 항목	평가관
○○○ (2014년)	2014.3.10.(10:10~11:10)	○ 기본 비행교육 - 11. 야간비행(미 실시) - 12. 비상절차(미 실시) ○ 확인관 항공대장 확인 누락	○○○

※ 울산광역시(울산○○○○대) 제출자료 재구성

4. 항공기 조종사 비행 교육·평가 관리·감독 소홀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63조(비행교육훈련) 규정에 따라 항공대장은 조종사의 조종능력 향상을 위한 비행훈련, 산불진압, 구조·구급훈련 등이 규정에 맞게 실시되는지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표7]과 같이 울산○○○○대 ○○대장으로 근무한 지방○○○ ○○○ 등 5명은 ○○대장으로 근무기간 동안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에 규정된 항공기 조종사의 조종능력 향상을 위한 비행훈련, 신규 임용 조종사 기종전환 비행훈련·평가, 부조종사의 주조종사 자격회복을 위한 비행훈련·평가 등을 적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위¹³⁾와 같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7]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항공대장 현황

직위	직급	성명	재직기간	현근무처	비고
소방○○대장	지방○○○	○○○	12.7.1.~14.1.1.	퇴직	
소방○○대장	지방○○○	○○○	14.1.2.~15.1.1.	퇴직	
소방○○대장	지방○○○	○○○	15.1.2.~15.7.1.	퇴직	
소방○○대장	지방○○○	○○○	15.7.2.~17.6.30.	○○소방서	○○○○과
소방○○대장	지방○○○	○○○	17.7.1.~17.12.31.	○○본부	○○○○과

※ 울산광역시(울산○○○○대) 제출자료 재구성

13) 1. 항공기 조종사 비행교육·훈련 소홀
2. 항공기 신규임용 조종사 비행 교육·평가 부적정
3. 항공기 조종사 자격 회복 훈련 교육·평가 부적정

5. 항공기 보안관리를 위한 자체보안대책 미수립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66조(항공기의 보안관리)¹⁴⁾ 규정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관리를 위해 자체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6. 8. 11. 21:55경 RC비행기 동호회원 3명이 음주상태로 ○○시 ○○구 ○○로 ○○대학교병원 헬기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헬기장에 계류 중이던 닥터 헬기 동체에 올라타는 등 행위로 헬기가 파손(로터의 구동축이 휘어짐 등)되어 수리비 견적이 25억원이 넘게 나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러함에도 울산○○○○대에서는 2018년 현재까지 항공기의 보안관리를 위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사람들 중 ①지방○○○ ○○, 지방○○○ ○○○, 지방○○○ ○○○는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63조(비행교육훈련)의 기종전환 교육 비행시간 및 자격회복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②지방○○○ ○○, 지방○○○ ○○○은 평가관으로서 기종전환 교육·비행평가 및 자격회복 교육·평가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③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 지방○○○ ○○○은 소방항공대 항공대장으로 서 교육·훈련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방항공대 항공기의 보안관리를 위한 자

14) 제66조(항공기의 보안관리) 항공대장 및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항공대장은 자체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타 비행장 내에 있으면 해당 비행장의 보안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항공대에 계류 중인 항공기는 반드시 격납고에 정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대기 중인 항공기는 계류장에 정치할 수 있다.
3. 항공기를 격납고 외의 계류장에 정치할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항공대장 또는 당번 근무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4. 비행 중 불순분자에 의한 피랍이 기도될 때에는 즉시 해당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거부하여야 한다.
5. 항공기를 경비 등 별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착륙한 경우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체 보안대책을 미수립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훈계(경고)] 위 관련자들을 훈계(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관련 공무원에 대한 특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방항공대 조종사 교육·훈련시간, 교육평가 기준 준수 및 항공기 보안관리를 위한 “자체 보안대책 수립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